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20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6. 10. 20.

판결 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75,50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292,889,462원에 대하여는 2016. 8. 23.부터, 1,286,04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0.부터 각 2016. 12.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506,0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088,24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9.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0.부터 각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32,802,208원에 대하여는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91,286,04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3. 5. 28. 설정된 채무자 피고(B),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실제 채무액 4억 8,0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과 2013. 5. 29. 설정된 전세금 3억 4,000만 원(등기부에는 3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2,000만 원이 증액되었다)인 C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5억 7,6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여 실제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은 9,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계약금 중 나머지 7,000만 원은 2015. 6. 23.에, 나머지 잔금은 3,000만 원은 2015. 7. 31.에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 측 문제 발생으로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라도 2015. 9. 30.까지 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7. 9.에 이르러 당일에 계약금 9,000만 원(계약금 중 4,000만 원은 2015. 7. 15.까지 입금)을, 2015. 8. 10.에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전세금반환채무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를 2015. 10. 10.까지 하되, 위 날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다(2015. 6. 22.자 매매계약과 2015. 7. 9.자 일부 변경된 매매계약을 구분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9. 계약금 중 5,000만 원을, 2015. 7. 15. 계약금 중 나머지 4,000만 원을, 2015. 8. 10.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 기간은 2015. 9. 30.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5. 10. 1.에 이르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C에게 전세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C과 나머지 1억 원을 2015. 10. 30.까지 반환하되,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0. 30.까지 C에게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은 2015. 12. 14. 피고에게 2015. 12. 18.까지 위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한편, 원고는 2016. 3. 8. C에게 미지급 전세금 1억 원 중 4,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이행기인 2015. 10. 10.까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승계하기를 원하고 지체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2015. 10. 26. 및 2015. 10. 28.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 등을 2015. 10. 31.까지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26. 피고에게 위 2015. 10. 22.자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현재 주류공급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있어 금융사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곧 해결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하지만 2015.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6년 5월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2016. 10. 18.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으로 전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합20099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으로 하였다(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라20984호로 항고되었으나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0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C에게 전세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그 후 원고는 2016. 3. 8. C에게 나머지 1억 원 중 4,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5년 10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른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다. 그 후 피고는 2015년 12월 초경 하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협조 거부로 채무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멸실되었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건물 부분 매매대금(506,060,00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주위적 청구).

(2) 만약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0,000,000원, 하나은행 이자 8,889,462원, 임대차보증금 및 이자 합계 288,226,946원, 취득세 32,900,000원,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2,785,800원, 2016. 10. 15. 납부한 재산세 1,286,040원, 손해배상예정액 90,000,000원 등 합계 544,088,2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전세금반환채무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5. 11. 10.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후 2015년 12월 초순경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① 추가 발생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비용 2,895,454원을 원고가 부담하고, ②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며, ③ C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④ 위 각 행위를 이행할 것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철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해제 철회'라 한다), 원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이 사건 해제 철회는 조건 미성취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5. 11.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에 의한 2015. 11.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가 전세금반환채무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전세금 3억 4,000만 원에 관한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이행기가 2015. 10. 10.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2015. 9. 30.이었던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매수인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성질이 사라지고 담보물권적인 성질만 남게 되므로 전세기간 만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 만료 후 목적물이 양도된다고 하여 전세금반환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고 하더라도,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원고는 C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신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이행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2015. 10. 1. C과 사이에 원고가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전세보증금 3억 4,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은 2015. 10. 1.에 지급하고, 1억 원은 2015. 10. 30.에 반환하기로 하되, 1억 원에 관한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하는 확약서(갑 제23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약서의 문언만으로는 C이 피고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제하고 원고에게만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 참조), 원고가 위 확약서의 작성으로 위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C이 2015. 12. 14. 피고에게 2015. 12. 18.까지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

원고는 2015년 10월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2) 하고

있다(대신, 원고는 위 채무의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채무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를 이행하지 않았고3),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11.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4) .

나. 이 사건 해제 철회의 효력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1. 10.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가 2015. 12. 23.경 원고와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으므로 2015. 11.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전세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는 2015년 12월경 하나은행 근저당권 대출채무 승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승계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해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으나, 원고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제 철회는 조건 미성취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5. 11. 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철회할 의사를 밝힌 상황인 점, 이 사건 해제 철회가 유효하게 되면 피고는 계약금 9,000만 원을 물취할 수 없게 되는 점, 피고는 2015년 12월경 이미 C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에 관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전세금반환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세금 반환채무의 인수(변제)와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해제 철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결국 원고는 2015년 12월경 나머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보증금 1억 원의 채무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 피고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를 탓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각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제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2015. 11. 10.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상회복의무

원고는 만약 이 사건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11. 10.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공통되므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살핀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1) 2015. 7. 9. 5,000만 원 및 2015. 7. 15. 4,000만 원 등 계약금 합계 9,000만 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물취함.

(2) 2015. 8. 10. 중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중도금 지급일인 2015. 8. 10.부터

지연손해금(피고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후 정산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받기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지체에 해당하여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방법인 공탁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지연손해금 부분 항변에서 동일하다.)

(3)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 8,889,46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6) (2016. 8. 23.)부터 지연손해금

(4) 전세보증금 반환액 284,000,000원(2015. 10. 1. 2억 4,000만 원, 2016. 3. 8.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2016. 8. 23.)부터 지연손해금

(5)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이자 4,226,946원(2016. 1. 21. 2,382,684원, 2016. 3. 25.

1,844,262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반환책임 없음.

(6) 취득세 2015. 12. 9. 3,290만 원,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 2015. 12. 23. 2,785,800원: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반환책임 없음(원고는 공탁한 돈을 스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재산세 2016. 10. 15. 1,286,04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2016. 10. 20.)부터 지연손해금(피고의 채무를 대납한 것에 해당함).

(8) 손해배상예정금 9,000만 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한 부분이므로 기각함.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24,175,502원(중도금 30,000,000원 +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 8,889,462원 + 전세보증금 반환액 284,000,000원 + 재산세 대납분 1,286,040원) 및 그 중 중도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8. 10.부터, 하나은행 대출금 이자 8,889,462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액 284,000,000원 합계 292,889,46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1,286,0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2. 8.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도진기

판사문성준

판사홍은숙

별지

-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25,318,000원, 건물의 개별주택가격 496,000,000원을 실제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940,000,000원으로 안분하여 건물 부분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에는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건물 부분 매매대금 산정방식에 의문이 있다
- 2) 한편, 원고는 2015. 10. 20.경 근저당권부 채무의 대출승계에 대하여 피고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상반된 주장도 함께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2015. 10. 26.자 내용증명(을 제4호증)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 3) 원고는, 전세금반환채무의 인수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의 불이행은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의 전세금반환채무의 인수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는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제공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10월 초순경 원고의 전세권반환채무 인수 및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와 상환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이었던 2010. 10.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가 부담하는 반대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피고는 2016. 8. 30. 원고의 은행계좌로 292,889,47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방법인 공탁 등이 아니라, 원고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은행계좌로 위 돈을 재송금한

바 있다). 또한 피고는 별건 소송비용액의 반환청구를 담보하기 위하여 30,000,000원을 불안의 항변으로 지급거절한다고 주장하나, 별건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원고는 이 부분 지연손해금을 2016. 8.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구하나, 옳기로 보인다. 이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하다.